

제289회 임시회
2010. 4. 23.(금)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문화위원회

심사 보고서

2010. 4. 23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
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
상정일자 :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2010. 4. 15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방재국장 송영화)

제안 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
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되어 우리도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
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제명을 “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“도로명주소법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조)
-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3조)
-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4조)
-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‘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’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- 충청북도 ‘새주소위원회’를 ‘도로명주소위원회’로 명칭변경 하고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9조 제1항)
-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길기웅)

-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2009년 4월 1일 「도로명주

소법」으로 제명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
으로써

-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제명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부산, 인천, 대전, 충남, 경남, 제주도 등 6개시도 개정완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도로명 주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2장(제3조 및 제4조)을 삭제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”을 “도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도지사”을 “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“법”을 “「도로명 주소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”이라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법”이라 한다.

제6조 중 “관할 주민”을 “주민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새주소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 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안내 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 등”을 “충청북도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로명사업 및 도로 교통분야에”를 “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	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제1장 총칙	제1장 총칙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 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 <삭제></p>
제2장 도로구간·도로명의 조정	제2장 도로구간·도로명의 조정
<p>제3조(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)</p> <p>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이라 한다)는 영 제6조제5항 및 제7조 제3항과 관련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(명칭, 구간, 폭, 설치·관리자, 관련 시·군 등)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도지사는 제1항의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 기준연도의 다음</p>	<p>제3조 <삭제></p>

연도 1월말까지 해당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제 1항의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중에 확정 또는 공고되거나 제 1항의 도로의 현황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계획이 확정 또는 공고된 날이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 2항의 통보를 할 경우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로구간의 설정 등) ① 도지사

는 관할 시장·군수로부터 영 제 6조제 5항 및 제 7조제 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, 도로명의 부여·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 9조에 의한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1. 도로의 연장, 폭, 기·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
2.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3.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시장·군수의 의견

제4조 <삭제>

<p><u>4.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 ·변경</u></p> <p>도로명의 부여 ·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, 역사성, 위치예측성, 도로명 주소의 영속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</p> <p><u>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 ·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
<p><u>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</u></p> <p><u>제5조(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)</u> 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(노선명)은 <u>도로명사업</u>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도로명사업</u>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(노선명)을 사용할 수 있다</p>	<p><u>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</u></p> <p><u>제5조(도로명의 사용의무)</u> 충청북도지사(이하 도지사라 한다)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(노선명)은 「<u>도로명주소법</u>」(이하 법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(노선명)을 사용할 수 있다.</p>
<p><u>제6조(도로명주소의 홍보)</u>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, 휴대용 화장지, 부채, 자, 저금통, 달력, 접지형 지도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.</p>	<p><u>제6조(도로명주소의 홍보)</u>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, 휴대용 화장지, 부채, 자, 저금통, 달력, 접지형 지도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.</p>
<p><u>제8조(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)</u> ①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</p>	<p><u>제8조(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)</u>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</p>

<p>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 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<u>새주소안내도 부착</u>, <u>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</u> 등 새 주소 안내시설 설치</p> <p>2 ~ 5.(생략)</p>	<p>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<u>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</u>, <u>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설치</u></p> <p>2 ~ 5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장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 등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영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새주소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<u>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</u></p> <p>2. <u>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3. <u>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</u></p> <p>4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	<p>제4장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등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2조의 2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</u></p> <p>2. <u>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4. (삭제)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	<p>제11조 <삭제></p>

<p><u>1. 도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</u></p> <p><u>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</u></p> <p><u>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·변경</u></p> <p><u>및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</u></p> <p><u>·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</u></p> <p><u>사항</u></p> <p><u>5.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</p> <p>제1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삭제>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부 칙	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도로명주소법

제8조 (도로명부여 등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기초조사
2. 도로구간의 설정·변경·폐지
3. 도로명의 부여·변경·폐지
4.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
5. 기초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
6.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
7.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
2.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
3.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·도지사와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거나, 2개 이상의 시·도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(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)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(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)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 (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·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·유지관리·손해배상공제가입·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

제22조의2(도로명주소위원회) ① 도로명의 부여·변경,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, 시·도에 시·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
3.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
4.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5.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(도로구간과 기초 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6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시·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·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시·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 2.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·관리·위탁에 관한 사항
 3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

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시·도 및 시·군·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

제11조의2 (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 절차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: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· 끝지점 ·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
 2.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: 변경 전 · 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· 끝지점 ·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
 3. 도로명 부여의 경우: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
 4. 도로명 변경의 경우: 변경 전 · 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, 변경후 도로명의 부여 사유
 5.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: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
 6.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: 변경 전 · 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
- ② 시장 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·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 · 군 · 구(이하 "인접 시 · 군 · 구"라 한다)의 시장 등(이하 "인접시장 등"이라 한다)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 · 군 · 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 · 군 · 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인접 시장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5

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
2.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
3. 도로구간 등의 설정·부여·변경 절차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,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·도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 등의 설정·부여·변경사항을 결정하여 시장 등과 인접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·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⑦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간등의 설정·부여·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
2.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

⑧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, 해당 시·도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·부여·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시장등에게 통보하며,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3 (2개 이상의 시 · 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) ① 시 · 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 ·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

2. 해당 시장등의 의견(제2항에 따른 인접 시 · 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)

3. 시 · 도지사의 의견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 · 도(이하 이 조에서 "인접 시 · 도"라 한다)의 시 · 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인접 시 · 도지사"라 한다)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 · 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 · 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 · 도지사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인접 시 · 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접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

2.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

3. 도로구간등의 설정 · 부여 · 변경 절차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,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

로구간등의 설정 · 부여 ·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 · 도지사 및 시장 등과 인접 시 · 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 · 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·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· 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간등의 설정 · 부여 · 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
2.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

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,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 · 부여 ·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 · 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 · 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,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